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9일, 김태선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10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의 지정,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신·증축 등의 행위 제한과 출입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훼손, 질 저하 등에 대한 지적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단순한 개체 증식·보강 위주의 복원 한계에 따른 서식지 보호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핵심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효적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멸종위기종 또는 법적보호종 지정과 동시에 핵심 서식지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핵심 서식지 훼손시 형사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